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 개발 탐색*

장진석**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 요약 》

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 개발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의 법령에 의한 농인에 대한 언어교육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 둘째, 다만 농학교와 구화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으로 수화와 구화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학교 통합교육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별도의 언어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수화는 농인들의 학습과 삶의 기본도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넷째,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 모형이 다음과 같이 개발 탐색되었다. ① 수화와 국어의 이중언어 교육체제 도입, ② 학교의 언어교육과정의 체계화 필요, ③ 교원들의 전문성과 소명의식 함양, ④ 농교육 정책결정 및 지도층에 전문가 배치, ⑤ 대학에 농교육교사양성 전문과정 설치·운영, ⑥ 농학·농문화·수화에 대한 전문연구기구 설치·운영, ⑦ 농문화 교육 및 농문화 행사 활성화 등이다. 이상과 같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언어교육의 효율화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학생, 이중언어교육, 농교육·수화의 전문성, 통합교육, 스승의 소명의식

* 이 논문은 2012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prchang@kornu.ac.k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무엇인가 삶과 관련하여 서로 의사를 소통하게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음성언어로 한다. 음성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농인은 청인의 말소리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없어 음성언어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초·중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청각장애학생이 2010년도 기준 전국에 전체 장애학생 79,711명의 4.7%인 3,726명이나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들은 전국 18개 농학교에서 1,150명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1,056명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서 1,491명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9명이 교육받고 있다. 현재 농성인들 대부분은 지금보다 그 교육여건이 훨씬 부실한 농학교나 구화학교를 다녔고, 극소수 농인은 초등과정 도중 또는 초등과정 이수 후 일반중·고등학교로 옮겨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농성인 대부분이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남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과 얼굴표정, 손짓과 몸짓 등을 종합해 눈으로 보고 무슨 뜻인지를 짐작하는 것이 남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단의 전부이다.

따라서 농인들은 개인차는 있지만 청인들의 말 자체를 정확히 들을 수 없으므로 맑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의 기본은 농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상화해 사용해 온 자연수화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농인들은 청력손실의 정도, 보청기 활용 음성언어 훈련의 정도, 구화교육의 정도, 수화교육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의사소통 수단으로 대부분 수화에 약간의 음성언어와 글을 이용하거나 수화와 구화와 음성언어와 국어 문장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들은 수화든 구화든 음성언어이든 간에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사소통 수단을 배워 알아야 수많은 다른 과제의 학습이 가능해 진다는 데 있다. 농성인들은 그들 간의 의사소통 대부분을 그들의 모어(母語)인 수화로 한다. 매우 자연스럽게 불편이 없다. 그것은 그들이 성인이 되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써 와서 몸에 익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들은 취학전 단계부터 음성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되 수화교육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자면 전국 농학교

의 언어교육 체제와 내용 및 방법이 이런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학생들이 농학교에만 취학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과 삶의 결정적인 도구인 언어교육은 그들이 특수학교이든 일반학교이든 그 어디에서 교육받고 있던 간에 수화이든 구화이든 음성언어(국어)이든 간에 체계적으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학교, 구화학교, 일반학교에서의 수화, 구화 및 음성 언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개선 보완되어야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차원이든 국가차원에서든 철저히 조사·연구해 나가야 할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와 중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 교육체제모형 개발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의 네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방침을 확인한다.

둘째, 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농인의 언어로서의 수화의 가치와 위상을 밝힌다.

넷째,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을 개발 탐색한다.

2. 연구의 방법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제도적 의지와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둘째, 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 1) 한국 청각장애교육 100년사 중 관련부분을 검토하였다.
- 2) 전국 농학교의 홈페이지(정보고시)를 통해 언어교육실태를 조사하였다.
- 3)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0년)’와 ‘2010 특수교육통계’ 책자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청각장애학생의 전국 및 학교별 평균 학생수를 조사하였다.
- 4)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언어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초등학교 교장 1명과 전화 상담을 하였다.
- 5) 구화학교의 언어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화학교 교장과 전화 상담을 하였다.

6) 교직경력 20년이 넘는 현직교사의 미발간 논문(자료)을 참고하였고 또한 그와 농학교의 언어교육실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셋째, 농인의 언어로서의 수화와 가치와 위상을 밝히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수화 내지 특수교육학자들의 견해를 취합하였다.

넷째, 위 첫째, 둘째, 셋째 항에서 밝혀진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언어교육의 부실 및 비효율 요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일곱가지로 대별해 그 이론적인 모형을 탐색 제시하였다.

II.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 실태

1. 국가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 방침

청각장애학생들을 비롯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방침은 대단히 잘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국 특수학교 및 각급 일반학교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그 내용(특수교육연차보고서, 2010)을 보면 헌법 제 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장애인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으로 보장해 놓고 있다. 다음 초·중등교육법에는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사들의 자격기준(제21조 교원의 자격 별표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제55조, 특수학교), 그 밖에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전공과의 설치(제56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제57조),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제5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필요 학생에 대한 일반 유·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통합교육실시 시책 강구(제59조) 등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에는 ① 장애인의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 등의 정책 강구, ② 장애인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촉진, ③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강구, ④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입학 지원·시험·합격자 입학 거부 등의 금지, ⑤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시설 정비 및 필요한 조치 강구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법률 제8483호, 2008, 5, 26 시행)에는 특수교육의 정의(제2조), 의무교육(제3조), 차별금지(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조), 교원의 자질향상(제8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제9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제14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제17조), 장애영아교육지원(제18조), 교육과정 운영(제20조) 등등을 비롯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지원, 전공과 설치·운영, 순회교육, 중일제 유치원과정 교육기관의 의무, 특수학급설치기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장애학생 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 등에 관한 규정들이 상세하고 치밀하게 법제화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교육과정 운영 등에는 ① 특수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종별 및 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② 영어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은 교육감 승인 후 학교장이 결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③ 특수교육기관장,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장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고, ④ 특수학교장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 11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공통적인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장애인 특성과 전혀 다른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의 필요성,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법적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학교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 실태

1) 농학교의 언어교육

현재 농학교에서는 그동안 많은 농학교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언어지도 교재를 제작하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의 언어지도 방침을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 농학교의 홈페이지(정보고시)를 통해 언어교육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학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농학교에서의 언어교육은 ‘학교교육계획’ 속에 초등과정에서는 우리말 국어어휘에 대한 발음을 알아듣게 가르치는 청능교육과 이를 따라 말할 수 있게 지도하는 발성·발음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로 우리말 국어어휘 등의 청능 및 발성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고, 중·고등부 과정에서는 정식교과서가 아닌 학교 자체에서 만든 교재로 국어문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청각장애학생들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국어로 된 글을 읽고, 국어로 글을 써서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확한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학생은 어쩔 수 없이 된지 모르는 말소리와 함께 손짓, 몸짓, 얼굴 표정 등의 수화로 그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 중 부모가 농인이면 농학교 유치부 내지 초등부 1학년 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상당수준의 수화를 배워 이를 이용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수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뒤에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수화구사능력도 일진월보하게 된다. 부모가 농인이 아닌 청각장애학생은 농학교 유치부 내지 초등부에 입학하면서부터 수화를 배워야 그를 도구로 하여 국어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국어교육 이전에 국어교육 및 기타 다른 영역의 교과학습을 하기 위한 언어로서 수화를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 농학교에서의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수화교육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초등과정 6년, 중·고등학교과정 6년 중 ‘수화교과’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등과정에서는 요육교사 및 담임교사가, 중·고등과정에서는 수업에 임하는 교사들이 알아서 수화와 국어를 적절히 활용해 수업하는 동안에 수화교육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청각장애학생들의 수화교육을 위해 법령이나 교육과정 속에 정식으로 초등1학년부턴 고3까지의 과정에서 수화를 어떤 내용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서 어느 수준의 수화구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국가 또는 학교차원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방침(guideline)이 없다. 따라서 초·중·고 단계의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수화교육에 대한 확실한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수화구사능력에도 상당한 개인차가 있으며, 특히 농교육에 대한 직전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 농학교로 온 신입교사들의 경우 수화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청각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농인의 생명과도 같은 수화의 중요성, 그들의 인간적인 특성, 농문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교육경험이 충분한 학교장은 별로 많지 않다. 농인의 본질을 모르는 학교장이 농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이끌어 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안과의사 보고 위암수술하라고 배치하는 것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 소설 ‘도가니’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이 유일하게 구사하는 수화는 “다른 사람

한테 말하면 죽는다” 라는 것이었다. 실제 광주인화학교 상황이 그랬다. 이 학교는 수화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교사가 한명도 없었다. 또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청각장애학교 교사 548명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3.8%인 21명에 불과했다. 수화를 할 줄 모르는 교사와 우리말을 못하는 학생 간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졌을지 안타깝다(송화선, 2011).

따라서 이러한 농학교의 상황 속에서의 기인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수화·구화·국어 등의 언어교육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고 언어교육이 부실한 만큼 모든 교과 학습도 부실하여 농학교 학생들의 학력은 일반학교 동학년 학생들의 학력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조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농학교의 교육력에 불만을 갖고 자녀를 일반학교에 보내 통합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학교의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결국 청각장애자녀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음성언어로 청인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녀들이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수화를 최악의 언어로 여기게 되고 농학교 교육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 고 하였다(면담자(교사), 2012. 1. 24). 이것은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부모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학교에서의 언어교육은 학생과 그 부모들이 소망하는 만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고, 그 무엇인가 효율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2)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이념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말을 듣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유형의 장애인들 중 많은 장애인들이 그들 부모의 희망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정되어 교육받고 있는데, 그들 중 농학교 취학을 기피하는 부모들은 청각장애자녀들을 일반학교에 보내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1,056명, 일반학급에 1,491명이 배정되어 교육받고 있다. 그런데 2010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 전체 학생 수는 10개 유형 총 79,711명에 달하며, 그 중 정신지체가 42,690명으로 전체의 53.6%에 달하며 청각장애아는 3,726명으로 4.7%에 불과하다.

2010년 현재 일반학교 특수학급 7,792개에 42,021명이 배정되어 학급당 평균 5.39명이 입급되어 있다. 또한 일반학급에 배정된 학생은 12,375개 학급에 13,746명이 배정되어 장애학생을 배정받은 학급당 평균은 1.1명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이 장애학생들의 일반학교에의 통합교육배치가 특수학급에 평균 5.39명이며, 일반학급에는 평균 1명인데, 여기에서 쓰고 있는 언어는 우리말 국어로서 만약 이 학생이 청각장애학생이라면 그 청각장애학생 하나를 위한 별도의 수화나 구화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이 농학교 교육을 기피하여 일반학교로 배정받아 간 경우 청력이 좋아 학생들이나 교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인 학생은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을 잘 해서 훌륭히 성장 발달할 것이다. 그러나 농학교에서 일반학교로 통합되어 간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부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들보다 수화 등 언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교과영역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에서 농학교로 역통합되어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담자(교사), 2012. 1. 24).

장애학생을 배정받아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정신지체 2명, 지체장애 1명, 성격장애 1명, 다운증후군 1명 합계 5명의 각기 다른 유형의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에 의해 특수교육을 받으며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일반학생들과 함께 해도 좋은 교과는 통합해 학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면담자(교장), 2012. 1. 26).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상호 이해와 협조아래 더불어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통합교육의 이상은 대단히 바람직하나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그 대상이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학습과 생활의 기본도구인 언어가 음성언어이든 수화나 구화이든 학교가 책임지고 섬세한 프로그램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학생 1명의 미래는 너무 어둡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농인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에서는 그 청각장애학생 1명을 위한 언어교육으로서 우리말 국어나 수화교육 양쪽 다 제대로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청력이 좋아서 우리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교사의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며 급우들과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의 학생이라면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말도 못 알아듣고 별도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수화도 가르쳐 주지 않아 모르면 이 학생은 청인들과도 농인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적 수단과 도구를 다 잃고 말게 된다.

국가가 추진하는 통합교육 형태에서 청각장애학생은 결국 의사소통 불가능으로 인해 학습의욕 상실 및 학습부진, 사회성 결여 및 소외감 증대, 자기정체성 혼란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농인에 대한 통합교육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Ramsey, 1997; 강주혜 재인용).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의 부작용은 이상과 같이 일반학교 통합교육에서 좋은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농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는 농인의 정신적 고향과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에 따른 부작용은 조속히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3) 구화학교의 구화교육 사례

비록 청각장애아동이라도 구화교육이 잘 되어 청인들의 말을 잘 이해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해 내게 된다면 이는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구화학교는 청각/정신장애 두 유형의 학생 138명 중 청각장애학생 55명에게 구화를 가르쳐 언어능력이 좋아지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보내 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구화학교에서는 구화교육을 통해 청인들의 말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농학교만 다녀 수화밖에 할 수 없는 농인들보다는 훨씬 밝고 명랑하며 이들에게는 수화는 금기시되고 있다고 한다(면담자(교장), 2012. 1. 26).

그러나 구화학교에서 수학한 이후 농사회에 나온 한 구화인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농인들 사회에서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수화를 배우지 않은 구화학교 출신들은 농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또한, 일반학교를 졸업한 청각장애인이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고 해도 청인들은 한결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다”는 뼈아픈 경험담도 있었다(면담자(졸업생), 2012. 1. 26). 따라서 난청의 정도에 불구하고 모든 청각장애학생에 대해 일체의 수화를 배제한 채 청능훈련과 발성훈련을 통해 농인들이 농인들끼리 수화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만큼 청인들과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II. 농인에 대한 수화의 가치와 위상

영어나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혼자서 미국이나 중국에 갔다고 가정하면 그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미국인이나 중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한국말로 떠들면서 손짓, 눈짓, 몸짓 등의 말 이외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의 의미를 형상화해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것도 간단한 명사나 동작 등을 뜻하는 것에 한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청인들이 보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으나 청인들의 음성언어를 귀로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농인이 되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이 농인들이 오랜 세월 두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온 자연수화를 배워 의사표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어를 배워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린 자녀가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해 말 같지 않은 목소리에 손짓, 몸짓으로 그 무엇인가를 표

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는 부모라면 ‘제발 말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절실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인간의 정서와 가치관 때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에서는 농인들이 그들 나름의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수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하게 일어났다. 즉, 농인들에 대한 언어교육으로 수화는 구화 우선 이데올로기에 밀려 밀란 회의 전후 오랜 기간 동안 구미 각국에서 박해를 받아왔다. 결국은 전세계 농교육계 지도자 164명이 참석한 1880년 이탈리아 밀란에서 개최한 국제농교육자대회에서 “수화보다 말(음성언어)이 우수하다는 데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조차 없다는 취지에서 ① 농인들을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해, 또한 ② 농인들에게 언어라는 도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농교육과 수업에 있어서 말을 가르치는 것이 수화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이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Van Cleve, J. V. & Crouch, B. A., 1989; 장진석, 2007).

이러한 수화는 1960년대 초 미국의 Stokoe의 연구에 의해 영어와 다른 언어적 구조를 완전히 갖춘 농인들의 언어로 공식 인정되면서부터 농인들에게는 결코 없어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Stokoe, 1960). 이러한 경향은 미국 전역에 확산되고 오늘날 미국수화는 영어의 세계화처럼 전세계 농인들의 국제어 역할을 하고 있다.

Johnson, Liddell, 그리고 Erting(1989) 등은 “Unlocking the Curriculum”이라는 유력한 논문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이 학습에 실패하는 것은 그들이 속한 학년 수준에서 제공되는 교과내용을 수용(이해)할만한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y)을 내축(內築)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1차언어로서 농성인사회에서 두루 통용되는 자연수화(natural sign language)를 튼튼하게 획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병하 재인용, 2009). 오늘날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으로서 읽기능력이 고등학교 졸업(12학년)에 이르러서도 일반학생의 3-4학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은 그 상당부분의 책임이 구화중심주의의 이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Moores, 2001). 이에 대한 일련의 반성으로 1970년대 이래 ‘정상화’ 원리에 대응하여 농인중심의 독특한 요구를 존중하는 토털커뮤니케이션 접근이 농교육계를 지배해왔고, 또 최근에는 농인세계에서 두루 통용되는 ‘자연수화’와 ‘농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농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소위 2Bi(bilingual/bicultural)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김병하, 2009, 2011).

농인을 가르치는 프랑스의 청인교사 Auguste Bebian(1817)은 “나는 수화는 정신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우수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고, P. Ladd(2003)는 ‘농사회는 구어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늘이 준 선물인 수화라는 언어가 있다. 의사소통수단으로 농인은 구어를 수어로 바꾸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였다. 스웨덴의 농가정에서 태어나 특수학교를 다닌 Patrik (2011)은 '농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수화를 가지고 세상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 수화(자연수화)는 농인들의 1차언어로서 그들의 삶과 학습의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언어로서의 위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농인에게 수화보다는 구화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농교육계와 농인 학부모 세계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주해(2009)는 “청각이 온전하지 못한 농인이 결국은 청각에 의존하여 배워야 되는 구화법보다는 수화습득이 훨씬 용이하며 의사소통에 유리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이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 청각장애인 공히 음성언어인 우리말 국어를 직접 듣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그들의 자연수화를 배우고 익혀 이를 도구로 하여 국어와 일반교과학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화는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의 제1언어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확고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IV.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 모형 개발

1. 수화·국어 이중언어교육체제 도입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중언어교육(bilingual language educatio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는데 이 교육의 핵심은 농아동에게 먼저 수화(sign language)를 익히게 한 다음 미국의 국어인 영어를 제2의 언어로 가르쳐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Johnson, Liddell, & Erting, 1989, 강주해 재인용). 따라서 이 이중언어교육은 미국 농학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Conference Proceedings of Bilingual Considerations in the Education of Deaf Students: ASL and English, 1990, 강주해 재인용). 또한 이 이중언어교육의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Helling, 1998, 강주해 재인용). 강주해(2009)는 “한국에서도 농아동들에게 익히기 쉬운 수화를 먼저 가르친 후에 유창한 수화구사능력을 토대로 해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며, 본인이 농학교 교사라면 이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다” 고 하였다.

농인이 비록 음성언어를 듣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말 국어를 알아야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어교육은 필수이다. 다만 어려서부터 음성언어를 정상적으로 듣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 수단으로 일차적으로 농인들의 자연수화를 먼저 배워 익히게 하면서 그를 토대로 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언어학습 원리에 맞는다는 것이 수화학자와 중견농인들의 공통된 믿음이다. 사실은 대부분의 농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들을 상대로 수화와 국어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담자(교사), 2012. 1. 24). 그러나 농인들에 대한 언어교육방침과 방법을 국가차원에서 언어습득원리에 맞게 정해서 추진하는 것과 학교에서 교사들의 가치관과 능력에 따라서 알아서 하게 하는 것과는 그 교육의 책무성과 효율성 면에서 크게 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차원의 이런 원칙과 방침으로 청각장애학생이 농학교에 다니든 일반 학교에 다니든 쉽고 빠르게 배워 익힐 수 있는 농인들의 모어(母語)를 우선적으로 가르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또는 이와 병행해서 제2언어로 국어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농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학생은 물론 일반학교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언어교육도 지역 몇 개 학교에 분산 배치된 학생들을 인근 농학교 등에서 그들의 1차언어로서 수화교육을 받게 하며, 그것이 비능률적 비생산적일 경우 농학교로 역전입시켜 공부하게 함으로써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지체 내지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이중언어교육 체제를 국가의 의지와 방침으로 정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의 언어교육과정의 체계화 필요

E. L. Thorndike(1874-1949)의 연결주의 학습원리(전성연, 2001)에 효과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접근의 법칙, 빈도(반복·연습)의 법칙, 개별화의 법칙 등이 있다. 이 학습원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육대상인 학생들 간에는 지능과 학습능력상의 개인차가 있으며 교육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개개인의 발달수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적용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학습의 성공은 학습과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성의 원리에는 학습자의 선수학습상태, 지능, 학습의욕 등과 함께 학교와 교사의 교육계획과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였다. 우리말의 학습(學習)과 연습(練習)이란 말은 ‘배워서 익힌다’와 ‘수없이 반복해서 익힌다’는 뜻이다. 특히 언어구사에 익숙해지려면 수없는 반복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이론에 의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특히 수

화 및 국어교육의 요체는 유아교육 단계로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전체교육과정에서 쉽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어렵고 복잡한 학습과제를 체계적 계통과 단계를 밟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치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 이런 언어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이런 준비와 계획 없이 하는 것과의 그 결과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 확고한 목표와 방침아래 유·초·중·고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언어교육 계획과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래야 언어교육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3. 교원들의 전문성과 소명의식(召命意識)의 함양

수화는 일반 음성언어처럼 독립적이고 규칙적인 지배를 받는 하나의 기호체계이며 시각적 수동적인 비음성적인 언어체계이다(Klima & Bellugi, 1979). 수화는 주류언어문화와 공존하고 있는 소수언어와 같이 미국수화(American Sign Language, ASL)는 영어와 다른,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 KSL)는 한국어와 다른 독특한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윤병천, 2004, 2005). 수화는 음성언어의 음소(音素, phoneme)에 상응하는 수화소(手話素, chere)가 있다(최상배, 안성우, 2003).

수화는 또한 공간과 신체 위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성, 이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 의미를 판단하는 시각성, 긴 말을 짧게 압축하여 표현하고 이해하는 축약성 등이 있고(장진석, 2005; 남기현, 2007), 유사(classifier)와 유사의 오노마토펜(onomatopoeia), 리듬(rhythm), 롤 쉬프트(role shift) 등의 특성이 있다(Lentz, Mikos, & Smith, 1993; Humphries, Padden, & O'Rourke, 1994; Costello, 1994; 장진석, 2005, 2006, 2008; Supalla, 2006). 마지막으로 농인들은 이 논문과 직결되는 국어의 수많은 다의어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 국어 본래의 의미를 수화로 만들어 표현하고 있다(장진석, 2009). 수화의 이상과 같은 언어적 특성 때문에 농인을 가르치는 교사는 마땅히 수화의 이러한 특성에 정통해야 하고 또한 이를 구사하는 능력도 능숙해야 한다. 즉, 수화와 농인의 인간적인 특성을 정확히 꿰뚫는 전문성이 요구된다(Wilcox, S & Wilcox, P, 1991; Liddell, 2003).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상과 같은 수화에 대한 전문성과 수화에 능통하다면 청각장애학생들의 언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소명의식(召命意識)은 매우 중요하다. 오천석(吳天錫, 2001)의 '스승'이라는 책의 서사(序詞) '교사의 기도' 첫 구절에는 '주여, 저로 하여금 교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저에게 이 세상의 하고 많은 일 가운데서 교사의 임무를 택하는 지혜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옵니다. 언제나 햇볕 없는

그들에서 묵묵히 어린이의 존귀한 영(靈)을 기르는 역사(役事)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옵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오천석의 이런 글에 이어지는 '스승의 길'에 대한 글 내용을 읽노라면 숙연하게 가슴을 저미게 하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느끼게 된다. 너무나 따분하고 고달픈 일이지만 장애인, 말이 통하지 않는 청각장애인을 맡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안다. 그들에게는 끝도 없는 인내와 절제 없이는 도저히 견뎌내기 어려운 직무라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청각장애 어린 생명들을 사람으로 기르는 이 일을 단순한 생활의 방편으로 여긴다면 이는 하나의 고달픈 노역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사는 이런 기막힌 장애아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는 안내자요 정원수를 다듬어 기르는 원정(園丁)이라 생각하면 이 일처럼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청각장애학생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숭고한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원들이 이상과 같은 농교육과 수화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아동을 훌륭한 인간을 기르는 교직에 대한 숭고한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 교육은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4. 농교육 정책결정 및 지도층에 전문가 배치

청각장애학생 학교교육의 질은 학교장의 자질에 달려 있으므로 농학교 교장은 농학(農學, Deaf Studies)과 수화의 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농교육의 전문성과 수화에 능통한 자가 아니면 청각장애인의 특성, 농교육, 수화교육 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및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농교육전문가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농학교 교장 배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화구사능력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 사례가 많지 않다. 이는 농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체제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여하튼 농학교 교육을 이끌어가는 학교장의 청각장애인특성과 수화구사능력상의 전문성 면에서는 개선·보완되어야 할 기본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장진권, 2011).

이와 더불어 학교를 지원·지도·감독하는 시·군·구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특수교육담당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에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수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어야 한다. 국가인력관리상의 한계가 있어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전국 3,700여 명에 달하는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일선 농학교 교육을 지원·지도·감독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에 청각장애인 교육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것은 개선·

보완되어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도층이 모르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지도층이 무관심한데 일선 농학교 교육, 특히 언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다.

5. 대학에 농교육교사양성 전문과정 설치·운영

청각장애학생 교육의 질은 그들의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 농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그들을 양성하는 대학교육에서 길러져야 한다. 농학교 교사 양성 전공교과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교과에 대한 학점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각장애인의 특성·농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각장애인의 학습과 삶의 기본도구인 수화구사능력이 능숙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훈련하는 농교육 교사양성 교육학과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립대학에 이런 농교육 전문인력 양성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국립대학 차원에서 어려워우면 현재 이런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사립대학에 국비지원을 통한 청각장애교사 양성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의 Gallaudet대학교는 완전히 국가재정으로 운영되고 대학의 봉직하는 모든 사람은 학내에서는 미국수화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1988년 ‘이제 농인 총장을(Deaf President Now!)’라는 성난 청각장애대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된 이래 이 학교 총장은 농인이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농인들의 권익신장에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가 본받을만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6. 농학·농문화·수화 전문 연구기구 설치·운영

농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제로는 농인의 특성을 깊이 연구 보급하는 농학, 농인들의 일반청인들과 다른 그들 고유의 다양한 농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정적 도구인 수화 등에 대해 국가차원의 전문 연구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와 특수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의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농학·농문화·수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농인의 교육과 복지정책을 진흥시키는 보다 섬세하고 전문적인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3,700여명의 청각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국가차원의 연구기능이 있어서 전국 각급 농학교와 일반학교의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할 때 그 교육은 효율화 될 수 있다.

7. 농문화 교육 및 행사의 활성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언어교육을 보다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인에게 비쳐지는 강렬한 인상이 남겨지는 농문화 포스터, 미술, 애니메이션 등을 연구·개발·발표·전시·경진하는 교육과 행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명 화가 또는 애니메이션 작가를 초빙하여 인상이 깊게 남을 수 있는 포스터, 미술,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생들의 작품제작·발표·전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경진대회 등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장진권, 2011). 이런 교육과 행사는 농인에 대한 언어능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농인의 정서와 시각적 특수성을 반영해내는 수화 연극이나 노래를 많이 연구하여 선보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농 유모어, 농 수필, 수화 재담, 수화 시(sign poetry), 연극 등을 창작 발표하여 농인 나름대로의 전통과 문화를 확립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화는 심미적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농인들뿐만이 아니라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인과 청인세계에 수화보급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농의 세계를 담은 카드, 카렌다, 노트, 액자, 도자기, 컵, 복장 등등 다양한 기념품을 대량 제작하여 농인들과 청인세계에 배포한다면 농인들은 자발적으로 농문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농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되는 훌륭한 전략적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청인들도 농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훨씬 넓고 깊어져 더불어 살아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수화보급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농인의 부정적 관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농의 세계를 알리는 대대적인 홍보물의 출판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좋은 소책자를 발간하여 농인들에게 무료 배부하여 농인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농역사(Deaf history)를 통해서 농인이 남긴 발자취와 눈부신 업적 등을 발굴함으로써 농인이 청인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생충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청인의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농인의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발굴하여 청인사회에 알려지도록 수행해야 한다. 이런 활동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언어교육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장해득이 부족한 농인들은 책을 멀리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농인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각종 뉴스, 각종 정보, 각종 드라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농인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농문화 교육과 행사들은 농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수화구사능력 신장 등에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모형 개발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청각장애학생 언어교육 방침은 헌법 등 관련법령에 모든 장애인에 차별을 받지 않고 희망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과 삶의 기본도구인 언어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국가차원의 언어교육 방침과 규정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둘째, 학교에서의 언어교육실태는 농학교에서는 학교교육 계획 속에서 초등과정에서는 국어어휘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청능 및 발성훈련을, 중·고 과정에서는 문장 지도를 하고 있고 수화는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교사들이 수업 중 상황과 능력에 따라 수화와 국어를 병용해 가면서 가르치고 있고, 구화학교에서는 수화를 배제하고 구화만을 가르치고 일반학교 통합교육에서는 수화도 국어도 따로 계획해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농인에 대한 수화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 학습과 삶의 기본적인 도구로 판명되어 있다. 국어가 궁극적인 언어라고 하더라도 농인들이 음성언어로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상 수화를 기본적으로 먼저 학습해서 국어문어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넷째,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언어교육체제 모형이 다음과 같이 개발 탐색되었다. ① 수화와 국어의 이중언어 교육체제 도입, ② 학교의 언어교육과정의 체계화 필요, ③ 교원들의 전문성과 소명의식 함양, ④ 농교육 정책결정 및 지도층에 전문가 배치, ⑤ 대학에 농교육교사양성 전문과정 설치·운영, ⑥ 농학·농문화·수화에 대한 전문연구기구 설치·운영, ⑦ 농문화 교육 및 농문화 행사 활성화 등이다.

이상과 같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언어교육의 효율화체제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주해 (2009). 농아인의 입장에서 본 특수교육의 제언.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국제 학술대회**.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
- 김병하 (2011). **한국특수교육론: 우리나라 특수교육(학)의 정체성**.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b). 2010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남기현 (2007). 한국수화의 수화 공간의 통사적 기능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실천과 이론**, 8(3), 46-67.
- 법제처 (1987). 대한민국헌법. 서울: 법제처.
- 법제처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법제처.
- 법제처 (2011). 장애인복지법. 서울: 법제처.
- 법제처 (2012). 초·중등교육법. 서울: 법제처.
- 송화선 (2011). “도가니 사건 일단락? 최소 30명 참혹하게 당했다” 기사. **주간동아**(2011.12.5).
- 오천석 (2001). **스승**. 경기: 교육과학사.
- 윤병천 (2004).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실천과 이론**, 5(1), 253-277.
- 윤병천 (2005). 국내 수화 연구의 동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19-26.
- 장진권 (2011). 청각장애교육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언(미간행 자료).
- 장진석 (2007). **미국 농사회의 변천사**. 서울: 교육과학사.
- 장진석 (2005). 자연수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대응식 수화 실현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 연구**, 12(2), 265-282.
- 장진석 (2006). 한국수화의 언어적 특성에 따른 국어대응식 수화의 문제점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2), 107-125.
- 장진석 (2008). 한·미 수화어휘의 언어학적 공통특성 분석: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연구**, 15(2), 221-237.
- 장진석 (2009). 국어의 다의어에 대한 수화표현 실태조사: 동사[보다]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연구**, 16(2), 183-204.
- 전성연 (2001). **교수-학습의 이론적 탐색**.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최상배, 안성우 (2003). **한국수어의 이론**. 서울: 서현사.
-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기념사업회 (2009).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면담자(교사) (2012). 필자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과제에 대한 전화상담 (2012.1.24).
- 면담자(교장) (2012). 필자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과제에 대한 전화상담 (2012.1.26).
- 면담자(졸업생) (2012). 필자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과제에 대한 전화상담(2012.1.26).

- 면담자(교장) (2012). 필자와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과제에 대한 전화상담 (2012.1.26).
- Costello, E. (1994). *American Sign Language Dictionary*. New York: Random House Inc.
- Humphries, T., Padden, C., & O'Rourke, T. J. (1994). *A Basic Course In American Sign Language*. 2nd ed. T. J. Publishers. Inc., Silver Spring: MD.
- Lentz, E. M., Mikos, K., & Smith, C. (1993). *Signing Naturally: Student Workbook Level 1-3*. Expanded ed. San Diego, CA: Dawn Sign Press.
- Liddell, S. K. (2003). *Grammar, Gesture, And Mean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ma, E., & Bellugi, U. (1979). *The Signs of Langua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re, D. F. (2001).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5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 Patrik, N., & Tomas, K. E. (2011). *Audism & Deafhood*. Denmark: Doviana Konsult & Tjanster.
- Ramsey, C. (1997). *Deaf children in public schools: Placement, context and consequence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tokoe, W.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Washington, DC: Gallaudet College Press.
- Supalla, T. (2006). *Sign Language Archeology: Integrating Historical Linguistics with Fieldwork on Young Sign Language*. 9th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Conference.
- Van Cleve, J. V., & Crouch, B. A. (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Wilcox, S., & Wilcox, P. (1991). *Learning to See: American Sign Language as a Second Language*. NJ: regents Prentice Hall/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The model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system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n Korea

Chang, Jin Seok

Korea Nazarene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odel development of the effective language education system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The first, it is found that there are not any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method of the languag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The second, it is investigated that the deaf schools generally teach the Korean sign language (KSL) and Korean language by their own education plans, but the oral reading education school and all the other general schools don't teach KSL throughout the country. The third, it's believed that the sign languages are the deaf's mother languages for the Deaf throughout the world. The fourth, the guideline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for the effect of the languag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is needed and wanted as followings: ① the bilingual education system, ② the detail system and programs of the language education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at the level of each of deaf schools, ③ the professional qualities and the feeling of royal summons as a teacher and principal of the deaf school, ④ the professional personnels of the offices and departments for the education of hearing impaired students, ⑤ setting up the teacher's education courses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and sign language courses in the universities, ⑥ the functions of the researching the professional effective methodologies of the deaf education, deaf studies/culture and sign language at the level of the government, ⑦ and education and events for developing and activating the various Deaf cultures to make the Deaf have their own identities and upgrade the qualities of their deaf educations including the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 hearing impaired students, bilingual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the deaf education & sign language, integrated education, the feeling of royal summons as a teacher

논문 접수: 2012. 02. 04 심사 시작: 2012. 02. 10 게재 확정: 2012. 03. 16